

## 체육대학관 운영 및 관리 규정 시행 세칙 규정

## 제 1장 수영장 운영

## 제 1 조 (목적)

체육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될 뿐 아니라 수영보급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 2 조 (시설)

수영장내에 있는 모든 시설 이외에 부대시설로 갱의실, 샤워실, 기계실 등을 둔다.

(五)

### 제 3 조 (관리)

- ① 수영장 내의 시설관리책임은 수영장 책임교수가 진다.
  - ② 수영장 관리상 아래와 같은 인원을 둔다.
    - 1. 수영장 책임교수 1명(전임강사 이상)
    - 2. 기계실 책임자 1명(기술직)
    - 3. 남/녀 쟁의실 각각1명(조수 혹은 조교)
    - 4. 인명구조원 1명(조수 혹은 조교)
    - 5. 수질 검사요원 1명
    - 6. 간호원 1명
  - ③ 수영장 수용인원은              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수영장 실내온도는 18-20°C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⑤ 수영장 물의 온도는 23-25°C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⑥ 수질검사는 1일 3회 실시한다.
  - ⑦ 유류 및 시설보수 의뢰는 원칙적으로 사무처에 한다.
  - ⑧ 수질약품 및 일반소모품은 체육대학에 의뢰한다.
  - ⑨ 기타 정해지지 않은 수영장 관리는 공중목욕장법 시행규칙(1981. 9. 5 보사부령 제 686호)에 의거한다.

제 4 조 (운영)

- ① 수업시간 및 운동선수 연습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체육대학생 외의 일반대학생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정규수업시간 및 운동선수 연습시간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어떠한 경우라도 수영지도교수 및 인명구조원이 없이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수영장 내에서 안전관리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형사, 민사상의 책임은 그 시간 담당교수 및 인명구조원이 진다.
  - ⑥ 아래와 같은 수영장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자는 일체 출입을 엄금하고 퇴장을 명한다.
    - 1. 수영장 출입시 반드시 샤워를 하여야 한다.
    - 2. 수영전 반드시 용변을 마쳐야 하며, 장내에서 함부로 침을 뱉지 말아야 한다.
    - 3. 수영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수건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 4. 신체에 이상이 있는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5. 피부병 환자는 이르게 출입을 불허한다.
    - 6. 음주자는 절대 출입을 금하며, 수영장 내에서 뛰거나 고성방가를 금한다.

7. 다이빙 보드의 사용은 지도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8. 모든 입장자는 지도자 및 인명구조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 2장 체력훈련장 운영

### 제 1 조 (목적)

체육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특히 체력단련 및 육성을 위하여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시설)

수영장내에 있는 모든 시설 이외에 부대시설로 쟁의실, 샤워실, 기계실 등을 둔다.

- |                |                |
|----------------|----------------|
| 1. 레그프레스 머신    | 2. 콰드씨클 머신     |
| 3. 체스트 웨스트     | 4. 쇳업 보드       |
| 5. 벨트 맷사지      | 6. 롤러 맷사지      |
| 7. 디클 라인더 벤치   | 8. 트위스트 머신     |
| 9. 메그 익스텐션 머신  | 10. 벤취 프레스     |
| 11. 케프 해크 머신   | 12. 버터플라이 머신   |
| 13. 공중 사다리     | 14. 콤비네이션 트레이너 |
| 15. 하체대        | 16. 커얼 스텐더     |
| 17. 렛 머신       | 18. 인클라인더 벤취   |
| 19. 디핑바        | 20. 치닝바        |
| 21. 리스트 롤 트레이너 | 22. 로링 머신      |
| 23. 편치볼        | 24. 런링바        |
| 25. 아이소 메트릭    | 26. 스타일리       |
| 27. 아령         | 28. 바벨         |
| 29. 바벨바        | 30. 덤벨         |
| 31. 덤벨바        |                |
- 1) Leg press Machine(레그프레스 머신)  
2) Quarter Circle Machine(콰트 서클 머신)  
3) Chest Weight(체스트 웨이트)  
4) Sit Up Board(싯-업 보오드)  
5) Belt Massage(벨트 맷사지)  
6) Roller Massage(롤러 맷사지)  
7) Declined Bench(디클라인 벤취)  
8) Twist Machine(트위스트 머신)  
9) Leg Extension Machine(메그 익스텐션 머신)  
10) Bench Press(벤취 프레스)  
11) Calf Hack Machine(케프 해크 머신)  
12) Butterfly Machine(버터플라이 머신)  
13) 공중사다리  
14) Combination Trainer(콤비네이션 트레이너)  
15) 하체대  
16) Curl Stand(커얼 스텐더)

- 17) Rat Machine(렛 머신)
- 18) Inclined Bench(인클라인 머신)
- 19) Dipping Bar(디핑 바)
- 20) chinning Bar(취닝 바)
- 21) Wrist Roll Trainer(리스트 롤 트레이너)
- 22) Rowing Machine(로 잉 머신)
- 23) Punch Ball(펀치볼)
- 24) Running Bar(런닝바)
- 25) Isometric(아이소 메트릭)
- 26) Styly(스타일러)
- 27) 아령
- 28) Barbell(바벨)
- 29) Barbell Bar(바벨바)
- 30) Dumbell(덤벨)
- 31) Dumbell Bar(덤벨바)

#### 제 3 조 (관리)

- ① 체력훈련장의 모든 시설 및 관리책임은 트레이닝장 책임교수가 진다.
- ② 체력훈련장 기구 보수 및 구입이 필요할 시는 책임교수가 관장에게 품의한다.

#### 제 4 조 (운영)

- ① 체력훈련장 사용시간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체력훈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조교이상의 지도자 입회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체력훈련장은 원칙적으로 체육대학생에게만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 ④ 체육대학생 이외의 학생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교수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체력훈련장 책임교수는 소정의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체력훈련장 사용자는 사용후 원상태로 정리하여 놓아야 한다.
- ⑦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는 일체 사용을 불허한다.

### 제 3 장 무용실기실 운영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무용교육의 효과적인 목적달성과 각종 시설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시설)

본 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실기실
2. 제1무용 실기실
3. 제2무용 실기실
4. 부 대 시 설
  - 1) 음 향 실

- 2) 조명실
- 3) 간의실
5. 각종 시설 비품
  - 1) 음향 기기
  - 2) 디미 뱅크
  - 3) 악기
6. 기타 부대 시설

#### 제 3 조 (관리)

- ① 무용실기실 내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은 학과장이 진다.
- ② 학과장은 각 무용실기실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실별 책임교수를 위촉할수 있다.
- ③ 무용실기실 내의 모든 시설 및 비품의 보수, 보완이 필요할 시는 각실 책임교수는 이를 학과장에게 의뢰한다.
- ④ 학과장은 각실 책임교수로부터 전기 사항을 의뢰받았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장에게 품신·조치토록 한다.

#### 제 4 조 (운영방법)

- ① 무용실기실 및 부대시설 사용은 원칙적으로 정규교과과정에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단 행사준비, 공연준비 등 제반사정으로 시간외 사용이 필요할 시는, 학장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무용실기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은 대학 무용학과 재학생에 한한다.
- ④ 무용학과 재학생 이외의 학생이 사용코자 할 시는 각실 책임교수·학과장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각실 책임교수는 소정일지에 매일의 운영현황을 기록해야 한다.
- ⑥ 무용실기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고정시설 및 음향기기·악기류에 한하며, 음향실 조명실의 기기사용은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무용실기실 사용자는 사용후 모든 시설과 기기를 원상대로 정돈해 놓아야 한다.
- ⑧ 무용실기실 사용중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시킬 수 있다.
- ⑨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향후 시설 및 비품사용을 금할 수 있다.

#### 부 칙(1장)

1.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수영장 책임교수를 포함한 보직교수회의에서 결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장)

1.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트레이닝장 책임교수 및 보직교수 회의에서 결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장)

1.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의하여 보직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